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2025.08.19.)	개 정 안 (0000.00.00..)	비 고
제5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⑤ (생략) (신 설)	**제5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단,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감면의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	
(신 설)	**부칙 <$promulno$, 7777. 12. 31.>**	
(신 설)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별지 / 별첨		
[별표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개 정) [별표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개 정)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개정전]

[별표 1] <개정 2021.1.29., 2021.1.28., 2022. 1. 25., 2022. 5. 24., 2024.2.20., 2024.8.20>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제4조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나) 그 밖의 선박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그 밖의 선박 중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자선류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① 외항선 : 28.5원 ②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개정전]

<table>
<tr><th>사용료의 종류</th><th>징수대상시설</th><th>요 율</th><th>비 고</th></tr>
<tr><td>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td><td>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td><td>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요금</th></tr>
<tr><td rowspan="3">일반화물</td><td rowspan="2">외항</td><td>입항</td><td>306</td></tr>
<tr><td>출항</td><td>192</td></tr>
<tr><td colspan="2">내 항</td><td>85</td></tr>
<tr><td rowspan="2">기계하역처리화물</td><td>외항</td><td>192</td></tr>
<tr><td>내항</td><td>51</td></tr>
<tr><td rowspan="2">컨테이너화 물</td><td>외항</td><td>4,200</td></tr>
<tr><td>내항</td><td>1,161</td></tr>
<tr><td rowspan="2">송유관이용화물</td><td>외항</td><td>111</td></tr>
<tr><td>내항</td><td>75</td></tr>
<tr><td colspan="2">무 연 탄</td><td>27</td></tr>
</table></td><td>o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td></tr>
<tr><td>(2) 화물체화료</td><td>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td><td>원/ 10톤·1일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야 적 장</th><th colspan="2">창 고</th></tr>
<tr><th>외항화물</th><th>내 항 화 물</th><th>외항화물</th><th>내 항 화 물</th></tr>
<tr><td>요금면제 기간</td><td>입항:5일
출항:7일</td><td>4일</td><td>입항:5일
출항:7일</td><td>4일</td></tr>
</table>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table>
<tr><td>1-10일</td><td>86</td><td>65</td><td>187</td><td>132</td></tr>
<tr><td>11-20일</td><td>187</td><td>132</td><td>274</td><td>196</td></tr>
<tr><td>21-30일</td><td>244</td><td>183</td><td>292</td><td>210</td></tr>
<tr><td>31일이상</td><td>292</td><td>210</td><td>339</td><td>236</td></tr>
</table></td><td>o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td></tr>
</table>

[개정전]

<table>
<tr><th>사용료의 종류</th><th>징수대상시설</th><th>요 율</th><th>비 고</th></tr>
<tr><td rowspan="3">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td><td rowspan="2">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td><td>(가) 국제카페리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td><td rowspan="3">o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td></tr>
<tr><td>(나) 크루즈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td></tr>
<tr><td>주차장시설</td><td>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td></tr>
<tr><td rowspan="2">(2) 연안(종합)여객
터미널이용료</td><td>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td><td>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다만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부가세 포함</td><td>o 2세 미만의 영아 면제</td></tr>
<tr><td>주차장시설</td><td>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td><td></td></tr>
<tr><td>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td><td>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td><td>원/1㎡, 1월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요 금</th></tr><tr><td colspan="2">창 고
(상옥)</td><td>외항화물</td><td>1,288</td></tr><tr><td colspan="2"></td><td>내항화물</td><td>929</td></tr><tr><td rowspan="4">야적장</td><td rowspan="2">포장</td><td>외항화물</td><td>571</td></tr><tr><td>내항화물</td><td>409</td></tr><tr><td rowspan="2">미포장</td><td>외항화물</td><td>306</td></tr><tr><td>내항화물</td><td>224</td></tr></table></td><td>o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td></tr>
<tr><td>(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td><td>항만건물, 항만부지</td><td>(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8)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의경우 항만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다)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5) 주차장의 경우 항만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td><td></td></tr>
</table>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3) 싸이로 및 냉장 창고 등 특수 창고의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이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이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6) 일괄전용 사용료	동일인이 일괄전용 사용하는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전]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 등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 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 (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자) 계선료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차)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박지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파)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하)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같은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 10바렐 미만은 10바렐로 본다. (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사) 삭 제 (아)「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전]

<table>
<tr><th>사용료의 종류</th><th>사 용 료 산 정 기 준</th></tr>
<tr><td></td><td>(자)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 분</th><th>환 산 기 준</th></tr>
<tr><td>중 량</td><td>1,000kg＝2,204.6파운드＝1톤
1Short Ton＝907kg＝2,000파운드＝0.907톤
1Long Ton＝1,016kg＝2,240파운드＝1.016톤</td></tr>
<tr><td>용 적</td><td>1㎥＝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td></tr>
<tr><td>유 류</td><td>1 L＝0.2642Gallon
1Gallon＝3.7854 L
1Barrel(42Gallon)＝158.9873 L</td></tr>
</table></td></tr>
<tr><td>(2) 화물체화료</td><td>(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td></tr>
<tr><td>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td><td>(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다) 동해묵호항(대통령령 제24638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묵호항에 한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해묵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중 무연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
(라) 법 제9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마) 수역 점용 면적 산정기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적용한다.</td></tr>
</table>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라. 기타	(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나)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란 항만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장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간 수송은 제외한다. (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 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나 선박수리에 투입된 인원 및 장비를 하선하기 위하여 다시 입항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 (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사장이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인천항 항만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후]

[별표 1] <개정 2021.1.29., 2021.1.28., 2022. 1. 25., 2022. 5. 24., 2024.2.20., 2024.8.20>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제4조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원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원 (나) 그 밖의 선박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그 밖의 선박 중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자선류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0.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톤12시간당) ① 외항선 : 2.85원 ② 내항선 : 0.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그 밖의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개정후]

<table>
<tr><th>사용료의 종류</th><th>징수대상시설</th><th>요 율</th><th>비 고</th></tr>
<tr><td>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td><td>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장치장</td><td>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요금</th></tr>
<tr><td rowspan="3">일반화물</td><td rowspan="2">외항</td><td>입항</td><td>306</td></tr>
<tr><td>출항</td><td>192</td></tr>
<tr><td colspan="2">내 항</td><td>85</td></tr>
<tr><td rowspan="2">기계하역처리화물</td><td colspan="2">외항</td><td>192</td></tr>
<tr><td colspan="2">내항</td><td>51</td></tr>
<tr><td rowspan="2">컨테이너화 물</td><td colspan="2">외항</td><td>4,200</td></tr>
<tr><td colspan="2">내항</td><td>1,161</td></tr>
<tr><td rowspan="2">송유관이용화물</td><td colspan="2">외항</td><td>111</td></tr>
<tr><td colspan="2">내항</td><td>75</td></tr>
<tr><td>무 연 탄</td><td colspan="2"></td><td>27</td></tr>
</table></td><td>o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td></tr>
<tr><td>(2) 화물체화료</td><td>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td><td>원/ 10톤·1일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야 적 장</th><th colspan="2">창 고</th></tr>
<tr><th>외항화물</th><th>내 항 화 물</th><th>외항화물</th><th>내 항 화 물</th></tr>
<tr><td>요금면제 기간</td><td>입항:5일
출항:7일</td><td>4일</td><td>입항:5일
출항:7일</td><td>4일</td></tr>
</table>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table>
<tr><td>1-10일</td><td>86</td><td>65</td><td>187</td><td>132</td></tr>
<tr><td>11-20일</td><td>187</td><td>132</td><td>274</td><td>196</td></tr>
<tr><td>21-30일</td><td>244</td><td>183</td><td>292</td><td>210</td></tr>
<tr><td>31일이상</td><td>292</td><td>210</td><td>339</td><td>236</td></tr>
</table></td><td>o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td></tr>
</table>

[개정후]

<table>
<tr><th>사용료의 종류</th><th>징수대상시설</th><th>요 율</th><th>비 고</th></tr>
<tr><td rowspan="3">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td><td rowspan="2">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td><td>(가) 국제카페리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td><td rowspan="3">o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td></tr>
<tr><td>(나) 크루즈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td></tr>
<tr><td>주차장시설</td><td>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td></tr>
<tr><td rowspan="2">(2) 연안(종합)여객
터미널이용료</td><td>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td><td>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다만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 부가세 포함</td><td>o 2세 미만의 영아 면제</td></tr>
<tr><td>주차장시설</td><td>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td><td></td></tr>
<tr><td>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td><td>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td><td>원/1㎡, 1월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요 금</th></tr><tr><td colspan="2">창 고
(상옥)</td><td>외항화물</td><td>1,326</td></tr><tr><td colspan="2"></td><td>내항화물</td><td>956</td></tr><tr><td rowspan="4">야적장</td><td rowspan="2">포장</td><td>외항화물</td><td>588</td></tr><tr><td>내항화물</td><td>421</td></tr><tr><td rowspan="2">미포장</td><td>외항화물</td><td>315</td></tr><tr><td>내항화물</td><td>231</td></tr></table></td><td>o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td></tr>
<tr><td>(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td><td>항만건물, 항만부지</td><td>(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8)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의경우 항만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다)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5) 주차장의 경우 항만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td><td></td></tr>
</table>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3) 싸이로 및 냉장 창고 등 특수 창고의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이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이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6) <삭제>	<삭제>	<삭제>	

[개정후]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 등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 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 으로 본다. (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자) 계선료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차)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박지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파)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하)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같은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 10바렐 미만은 10바렐로 본다. (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사) 삭 제 (아)「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후]

<table>
<tr><th>사용료의 종류</th><th>사 용 료 산 정 기 준</th></tr>
<tr><td></td><td>(자)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 분</th><th>환 산 기 준</th></tr>
<tr><td>중 량</td><td>1,000kg＝2,204.6파운드＝1톤
1Short Ton＝907kg＝2,000파운드＝0.907톤
1Long Ton＝1,016kg＝2,240파운드＝1.016톤</td></tr>
<tr><td>용 적</td><td>1㎥＝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td></tr>
<tr><td>유 류</td><td>1 L＝0.2642Gallon
1Gallon＝3.7854 L
1Barrel(42Gallon)＝158.9873 L</td></tr>
</table></td></tr>
<tr><td>(2) 화물체화료</td><td>(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td></tr>
<tr><td>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td><td>(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다) 동해묵호항(대통령령 제24638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묵호항에 한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해묵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중 무연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
(라) 법 제9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마) 수역 점용 면적 산정기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적용한다.</td></tr>
</table>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라. 기타	(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나)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란 항만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장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간 수송은 제외한다. (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 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나 선박수리에 투입된 인원 및 장비를 하선하기 위하여 다시 입항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 (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사장이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인천항 항만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전]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5조 관련)

<개정 2020.09.24., 2020. 12. 18., 2021.1.28., 2021.04.27., 2021.07.20., 2022. 01. 25., 2022.08.30., 2024.02.20., 2024.08.20., 2025.01.21., 2025.08.19.>

1.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100%	(1) 군함 (2) 관공선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내항선 (5)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6) 통과선박 (7)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8) 화물 양하(揚荷: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횟수에 상관 없이 감면한다) (9)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11) 경인항을 입출항 하고자 인천항을 통과하는 선박(인천항에 한함)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이내	(1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항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50%	(13)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14)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5)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16)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제주항·인천항·여수광양항·속초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거나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7)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 항로표지료는 제외
	30%	(18)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 및 동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한다) * 단,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을 따른다. (19)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0)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21)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2)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0%	(23)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
	15%	(24)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 및 동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5%를 적용한다) * 단,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을 따른다. (25)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2) 관공선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통과선박 (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6) 연안어선 (7) 5톤 미만의 소형선 (8)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9) 국가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10)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11)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12)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1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정한다) (14)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15)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16)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이내	(17)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70%	(18)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50%	(19)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0)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1)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제주항·인천항·여수광양항·속초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거나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2)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 * 접안료에 한하여 감면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30%	(23)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4)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25) 2025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6)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27)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0%	(28)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 (29)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제외,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감면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30)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31)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 입출항료	100%	(1) 군용화물 (2) 선용품 (3) 여객의 수하물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5)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6)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7)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8)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9)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11)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12)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13)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4)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15)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개정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50%	(16)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20%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실증 횟수와 관계 없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1년에 1회만 감면하며 감면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다.)
	10%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정한다)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2.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 하단의 '감염 경보 해제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조정(경계→주의)일을 뜻한다.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30%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페리 여객선(2020년 1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접안료 및 정박료	30%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카페리 여객선(2020년 1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80%	(1) 한중 여객항로가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임대한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2020년 1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삭제>	<삭 제>

[개정전]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를 적으십시오

구 분		□일 반 항만시설 □전 용 사용신청(승낙)서 □계 속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업체코드	□□-□-□□□□ 업체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선박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선 박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비 m	예 상 흘 수	□□.□m	
항만시설	사용구분	□ 1. 최초 2. 연장 3. 변경 4. 취소	작 업 구 분	□ 1. 입항 2. 이선	
	시설코드	[ ][ ][ ]-[ ][ ] 시설명	허 가 번 호		
	면 적	㎡ 위치			
	사용목적	□□ 01. 화물을 싣고 내림 02. 화물을 내림 03. 화물을 실음 04. 수리 05. 해난 06. 급유 07. 접안대기 08. 화물대기 09. 상시대기 10. 출항대기 11. 해상하역 12. 계선 13. 수입화물 장치 14. 수출화물 장치 99. 기타			
	사용 명세				
	내릴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싣는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장치화물	1. □□ □□□,□□□mt □□□□□□개 2. □□ □□□,□□□mt □□□□□□개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조건				
사용료	면제 사유	□□ 01. 군항 02. 관유선 03. 조선 선박 수리 04. 해난 05. 검역 정박, 06. 낙도보조항로 07. 수산업협동조합 소유 선박 08. 국고 귀속, 압수, 폐기 화물 09. 갑문사정 99. 기타			
	면제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출 명세				
	일부 면제	□ 1. 유 2. 무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징 수 의 뢰 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비 고					

□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항만공사 사장 귀하

□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항만공사 사장 (인)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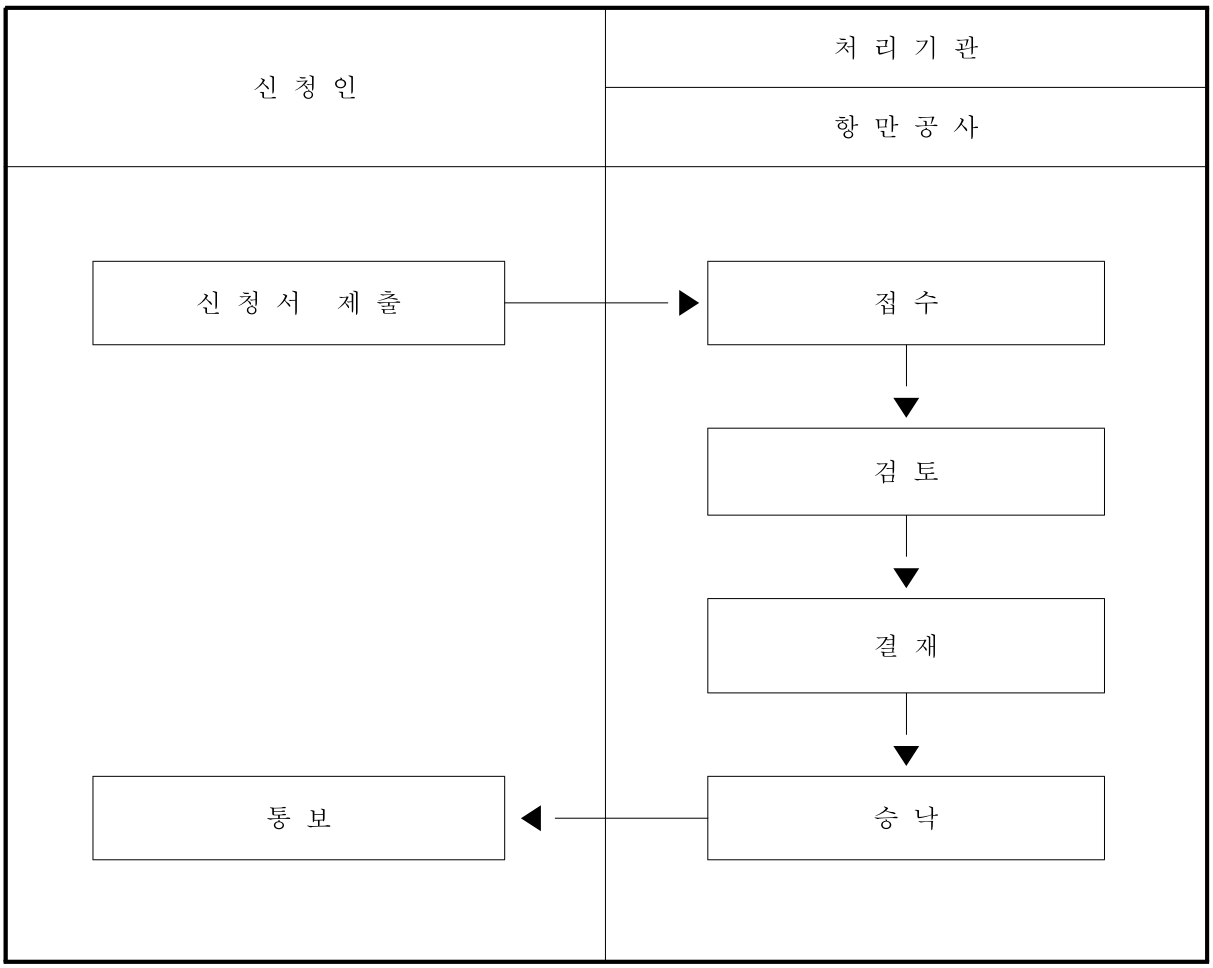

[개정후]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5조 관련)

<개정 2020.09.24., 2020. 12. 18., 2021.1.28., 2021.04.27., 2021.07.20., 2022. 01. 25., 2022.08.30., 2024.02.20., 2024.08.20., 2025.01.21., 2025.08.19.>

1.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100%	(1) 군함 (2) 관공선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내항선 (5)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6) 통과선박 (7)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8) 화물 양하(揚荷: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횟수에 상관 없이 감면한다) (9)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11) 경인항을 입출항 하고자 인천항을 통과하는 선박(인천항에 한함)
	100% 이내	(1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항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50%	(13)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14)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6)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 항로표지료는 제외
	40%	(17)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30%	(18)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 및 동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한다) * 단,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을 따른다. (19)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0)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1)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2)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평택당진항·군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25%	(23)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15%	(24)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 및 동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5%를 적용한다) * 단, 인천항의 경우 감면대상 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방안을 따른다. (25)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2) 관공선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통과선박 (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6) 연안어선 (7) 5톤 미만의 소형선 (8)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9) 국가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10)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11)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12)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1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정한다)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15)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16)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00% 이내	(17)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70%	(18)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50%	(19)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0)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1)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원양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풀컨테이너선 * 접안료에 한하여 감면 * 원양항로 :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지역
	40%	(22)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30%	(23)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24)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25)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26)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27)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평택당진항·군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25%	(28)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한다)
	20%	(29)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단,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한 선박(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은 제외한다)에 한하며, 감면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30)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31)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 입출항료	100%	(1) 군용화물 (2) 선용품 (3) 여객의 수하물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5)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6)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7)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8)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9)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 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개정후]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6)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20%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실증 횟수와 관계 없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1년에 1회만 감면하며 감면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다.)
	10%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정한다)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2. <삭제>

[개정후]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를 적으십시오

구 분		□일 반 항만시설 □전 용 사용신청(승낙)서 □계 속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업체코드	□□-□-□□□□ 업체명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선박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선 박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비 m	예 상 흘 수	□□.□m	
항만시설	사용구분	□ 1. 최초 2. 연장 3. 변경 4. 취소	작 업 구 분	□ 1. 입항 2. 이선	
	시설코드	[ ][ ][ ]-[ ][ ] 시설명	허 가 번 호		
	면 적	㎡ 위치			
	사용목적	□□ 01. 화물을 싣고 내림 02. 화물을 내림 03. 화물을 실음 04. 수리 05. 해난 06. 급유 07. 접안대기 08. 화물대기 09. 상시대기 10. 출항대기 11. 해상하역 12. 계선 13. 수입화물 장치 14. 수출화물 장치 99. 기타			
	사용 명세				
	내릴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싣는 화물 종류, 톤	1. □□ □□□,□□□mt 2. □□ □□□,□□□mt 3. □□ □□□,□□□mt			
	장치화물	1. □□ □□□,□□□mt □□□□□□개 2. □□ □□□,□□□mt □□□□□□개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조건				
사용료	면제 사유	□□ 01. 군항 02. 관유선 03. 조선 선박 수리 04. 해난 05. 검역 정박, 06. 낙도보조항로 07. 수산업협동조합 소유 선박 08. 국고 귀속, 압수, 폐기 화물 09. 갑문사정 99. 기타			
	면제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산출 명세				
	일부 면제	□ 1. 유 2. 무	면 제 사 유		
	사 용 료		징 수 의 뢰 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비 고					

□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항만공사 사장 귀하

□ 「항만공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항만공사 사장 (인)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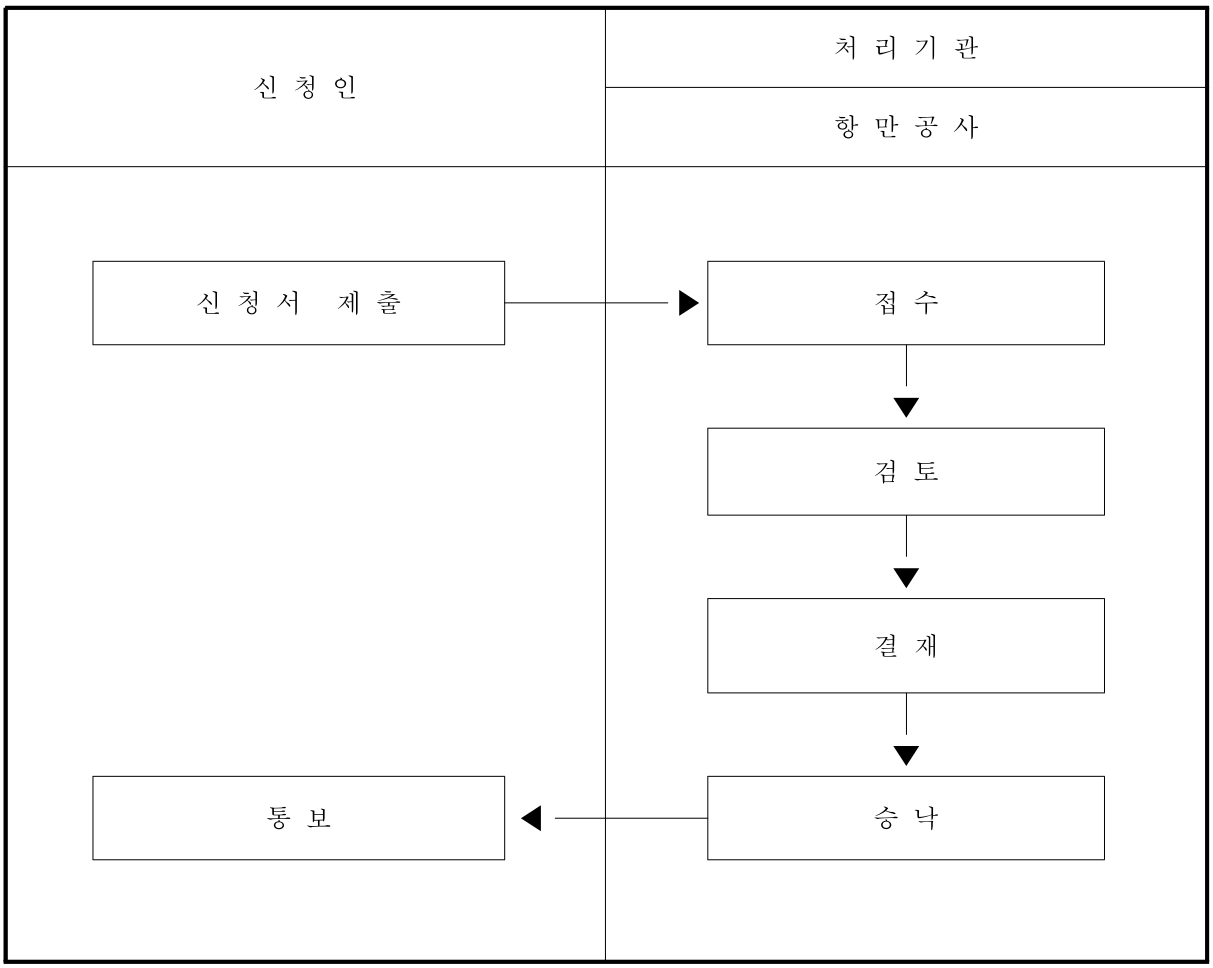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